

June 30,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1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6. 22. ~ 6. 26.)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0. 6. 23.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10개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예방·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됨. 주요 내용으로 ① 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의 연장횟수 및 기간 제한을 폐지, ②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해 CMIM-IMF가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의견 교환 및 공유 정보 확대 등 상호협력체계 강화, ③ CMIM이 위기해결 지원 시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기재부2]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2020. 6. 25.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도입, ②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하게 2단계 세율로 과세(20, 25%), ③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금융위 등]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2020. 6. 24.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척결할 종합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회사 등에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구축 의무화, ②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 마련 계획(3분기 중), ③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과기부의 점검 및 위법사항 적발에 대한 제재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보이스피싱 대책 및 현장방문



[과기부1]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20개 과제 확정

2020. 6. 22.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20개 과제를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작년보다 예산 및 과제가 2개 늘어난 20개 과제를 390억원 규모로 추진, ② 작년에 2개 과제를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과제에 전면적으로 클라우드소싱 방식 적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제 확정



[과기부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발표

2020. 6. 23.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른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 병행, ② 코로나19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기업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③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기부3]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발표

2020. 6. 24.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 ②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 ③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과기부4]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2020. 6. 24. 제16차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 확정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 ② 2020년에 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클라우드 플러그인 사업), ③ 기존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기업당

2천만원)하여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종합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공정위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확정

2020. 6. 23.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함(시행: 9. 1.). 주요 내용으로 ①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 제시(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 ② 추천·보증 광고와 관련한 문자, 사진,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공개, ③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보도자료



[참고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공정위2]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2020. 6. 25.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플랫폼-입점 업체 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혁신 성장을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21년 상반기), ②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 제정(2020년 12월), ③ 입점 업체에 대한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산자부]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2020. 6. 22. 물류 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인 로봇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앞당기도록 계획, ②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③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의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구독’ 형태의 로봇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성윤모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식약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2020. 6. 25.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12월부터 어린이 기호 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 ②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 등의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 시행, ③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 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1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CVC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내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자를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고, 특례적용 한도는 100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사전 가업승계는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의 피해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 삭제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